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의2제4항부터 제6항).
-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전력기술인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보급 또는 활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9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부과 관련 검토 (안 제21조의2)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함)에게 부과되는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의2는 규율대상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21조의2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 관한 서로 다른 취지의 제도를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우선, 안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의 설치·변경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과 관련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당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별개의 제도인 안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조(條)를 나누어 각각 규율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1조의2제4항·제5항은 다음과 같이 무과실책임 부담주체 명확화 및 손해배상책임 요건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안 제21조의2제4항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함. 위 개정조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면, 같은 조 제4항은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을 무과실책임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안 제21조의2제5항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아닌 “제4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로 규율하고 있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뿐만 아니라 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자까지¹⁾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음. 따라서, 충전시설 화재 등으로 인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21조의2제4항·제5항은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해당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더라도 고의·과실을 제외한 인과관계 등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해당 조항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충전시설의 화재 등이 차량 소유자 등의 고의·과실로 야기된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안 제21조의2 제4항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장을 위해 화재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683조 또는 제719조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됨. 이와 같은 보험자의 책임은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게 됨.

「상법」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입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각각 규율하고, 그 중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요건을 공작물소유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무과실책임(「민법」 제758조제1항) 및 국가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무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입법례를²⁾ 고려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법원행정처는 안 제21조의2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만 하여,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이기만 하면 해당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결함이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무과실책임을³⁾ 인정하더라도 고의·과실 외의 다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3) 법원행정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에, 영업에 따른 이익을 받고 영업수행과정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해당 영업의 위험성에 따른 손해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칭을 추가하고 누락된 문구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 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은 정)